



제300회 임시회  
2011.05.16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---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4월 4일
- 제출일자 : 2011년 4월 7일

## 3. 제안이유

-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, 현장 밀착형 장학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

## 4. 주요내용

- 가.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함  
(안 제5조제2호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 개편안(2010.5)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반고등학교의 “컨설팅장학, 수시장학, 통신장학” 중에서 “컨설팅장학”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.

-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학생·학부모·교사 등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, 초·중·고등학교를 통합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됨.
- 다만, 지역교육장은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·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지도·감독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 이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
[참고]

- 지역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현황

| 순 | 교육청명 | 학 교 수  | 순   | 교육청명 | 학 교 수  |
|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|
| 1 | 청주   | 29(19) | 7   | 영동   | 5(2)   |
| 2 | 충주   | 11(6)  | 8   | 진천   | 4(2)   |
| 3 | 제천   | 7(4)   | 9   | 괴산증평 | 5(3)   |
| 4 | 청원   | 9(3)   | 10  | 음성   | 3(2)   |
| 5 | 보은   | 4(2)   | 11  | 단양   | 3(2)   |
| 6 | 옥천   | 3(2)   | 합 계 |      | 83(47) |

※ ( ) 은 이관대상 학교 수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[법률 제10046호, 2010. 2. 26.]

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35조(교육장의 분장 사무) 교육장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.

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2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

### 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[대통령령 제22230호, 2010. 6.29.]

제6조(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)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학습활동, 진로지도, 강사 확보·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2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3. 특수교육,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,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4. 학교체육·보건·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
5.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
6. 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7. 평생교육 등 교육·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·집행, 수업료,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사항